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1036 무고
피 고 인 A
검 사 정연우(기소), 김민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가나다
담당변호사 송승우
판 결 선 고 202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로, C은 같은 학년 부장교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C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며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마치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8. 21.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광역시경찰청 여성보호



계 D해바라기센터사무실에서, "저는 피고소인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학년부장 교사(피고소인)와 학년소속교사(고소인) 관계입니다. 피고소인은 2025년 5월 7일 오후 B초등학교 ○○교육실에서 학생 지도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며 하소연을 하던 중 고소인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하려던 고소인에게 신체접촉을 하였고 키스를 하며 손가락을 항문,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5월 8일 저녁 자살시도를 하고 이어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취하서, 고소장

1. 불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고소 당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영상 유포, 징계절차 진행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까지 빠지게 됨으로써 더욱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무고자와 그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전 사건의 충격으로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는 등 정신적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도 이 사건 범행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29

판사 유성현 _____